한국장학재단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

든든학자금대출 상환안내 핵심설명서

상환 방법

든든학자금대출의 상환에는 크게 **자발적 상환(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상환)** 과 **의무적 상환(연간 발생 소득에 따른 상환)**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자발적 상환

① **1회성 중도 상환** : 통장에서 즉시 출금 신청(대출시 기 등록한 출금계좌 선택 가능), 가상계좌 발급 중 선택 가능 (**입금 및 처리 가능시간 : 당일 오후 7시까지**)
www.kosaf.go.kr〔사이버창구>학자금대출관리>학자금 대출상환>중도상환〕

② **든든이체약정(본인계좌 자동이체 납부) 신청** : 매월 자동이체 자발적 상환을 원하는 경우 고객 본인의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www.kosaf.go.kr〔사이버창구>학자금대출관리>계좌관리>든든이체약정 등록〕

※ 든든학자금의 자발적 상환은 의무상환금의 고지체납 발생 시 불가능합니다. 관련 메시지 확인 시 국세청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(www.icl.go.kr)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의무적 상환

① **의무적 상환의 개시** : 졸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년도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

② **연 원천공제 상환(근로, 연금 소득 등)** : 연말정산 후 월 납부액을 세무서에서 고용주에게 통지,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신고, 납부

③ **기타 원천공제 상환(퇴직 소득)** : 퇴직소득 발생 시 고용주가 퇴직소득에서 원천공제하여 신고, 납부

④ **본인 신고/납부 상환(양도, 상속 및 증여 소득)** : 양도소득세, 상속 및 증여세 신고시

※ 든든학자금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과 함께 합니다.(홈페이지: www.icl.go.kr / 콜센터: 126-8)

대출 후 신고 의무

든든학자금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특별법에 의거하여 **채무자 신고** 및 **해외이주·유학 신고**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

채무자신고 / 해외이주·유학 신고

① **정기 채무자 신고(매년 12월 1일~31일)** : 본인의 소득과 재산정보 등을 매년 1회 이상 신고 필요

② **비정기 채무자 신고(수시)** : 주소, 직장, 소득 발생 등 채무자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필요
www.kosaf.go.kr〔사이버창구>학자금대출관리>채무자신고〕

※ 든든학자금의 상환은 소득발생에 따라 진행되며, 채무자신고가 상환 개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③ **해외이주 신고** : 해외이주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 필요

④ **해외유학 신고** : 6개월 이상 해외유학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 필요
www.kosaf.go.kr〔사이버창구>학자금대출관리>해외이주/유학관리〕

장기미상환자 안내

졸업 후 3년 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, 상환시작 이후 3년 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% 미만인 경우 **장기미상환자가 되어 국세청 재산조사 등 불이익이 발생**될 수 있으므로, 적극적인 상환 노력이 중요합니다.

☺ 여러분의 소중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은 후배들의 학자금 대출에 사용됩니다.

※ 핸드폰, 집주소, 이메일주소 변경시 www.kosaf.go.kr에서 개인 정보를 수정해주세요.

※ 상환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전달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라며,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안내 등을 받지 못하여 고객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(☎ 1599-2000).